

\*\*\*\*\*

구미제국의 뉴미디어정책

\*\*\*\*\*

1. 머리말

각국의 미디어상황은 여러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

첫째, 기술의 발달이 있다. 기술의 진보는 미디어상황의 전개를 진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신문, 영화,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여러가지 정보미디어가 등장하고, 이러한 개별미디어가 오늘날과 같은 기능, 형태로 발전한 것은 기술개발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둘째, 경제적인 발전이 있다. 모든 미디어가 유효하게 사회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규모를 갖는 사업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가령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개발되어도, 그것을 사업화하는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현실의 미디어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셋째, 법제도의 문제가 있다. 능률적인 제도야말로, 한 국가의 미디어질서를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구조에 의하여 미디어와 국민의 권리와 의 관계, 다른 미디어간의 질서, 같은 종류 미디어의 상호질서, 각각의 미디어내의 질서까지도 규정된다.

넷째, 그와 같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국민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법제도의 구조내에서, 기술개발과 충분한 경제력에 의하여 등장한 미디어도 이용자의 필요성을 흡수하지 못할 때에는 존속 발전할 수 없다. 물론,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필요성이 미리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의 탄생에 자극되어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미디어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와 이용자의 필요성은 대체로 동시발생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의 필요성은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으로양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국민의 지적성숙도, 문화적충족도, 경제적달성도, 생활시간적 여유등의 제조조건에 의하여, 어떤수준의, 어떤종류의

필요성이 개발되고, 현실화 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이 조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요인은 상호연관성이 높다. 신기술개발이 법제도의 변혁을 초래하고, 장려적인 법제도는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가져오며, 규제적인 법제도는 기술개발을 지체시킨다. 이러한 상호관련적 기반구조 가운데에서 하나의 미디어상황이 구현된다.

따라서, 통신정책이 어떤 미디어상황, 미디어질서를 생겨나게 하는 제조치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시책) 라면 이러한 정책은 이상의 제요인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즉, 통신정책은 기술, 경제법제, 문화등의 그자체의 영역에 있어서의 정책과 강한 유대관계를 갖는다. 그 결과 국제경쟁시장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시책이 통신정책의 형태를 취한다든지, 산업진흥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적 목표가 통신정책을 통하여 시행되는 등의 경우가 생겨난다. 이러한 통신정책내지 미디어정책이 구미주요제국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어떠한 관련문제상의 정책적 판단이 얹혀 있는지 이하에서 살펴본다.

## 2. 미국의 뉴미디어정책

미국의 통신정책의 근저에는 자유경쟁에 의한 통신의 자유로운 전개라는 이념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 뉴미디어를 포함하는 전기통신전반에 걸쳐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기업에 의한 상업활동을 통하여 그 사회적 기능이 운영되고 있다. 물론, 복잡, 고도화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무간섭주의가 독점, 집중 등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익을 위한 다면적인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모든 규제가 대폭완화되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뉴미디어가 가장 발전한 국가지만 그 중심은 CATV와 통신위성에 있다. 한마디로 양자의 자유로운 결합에 의해 기존의 방송에 대항하는 규모의 시스템이 형성되어, 기존의 방송과 유선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시스템의 혼재상태에 들어섰다. CATV가 출현한 것은 1950년대경이다. 당시 난시청 해소의 수단으로 등장한 CATV에 대하여, FCC는 Common Carrier도 방송도 아니라고 하여 이를 규제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60년대에 들어서 CATV가 구역외 재방송에 의해 원격

지의 텔레비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청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자 FCC는 이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 규제의 주요내용은 케이블사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기존방송의 권리옹호를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케이블에 대한 규제가 점차 폐지되어, 1980년에는 단지 프로그램 전송신의무만 남게되어 엄격한 규제에서 재완화되었다. 그 배후요인으로 동일지역에서 텔레비전과 CATV 경영이 금지되어, 유력한 TV방송국 대부분이 다른 지역의 CATV를 산하에 두어 CATV가 기존방송으로서는 꼭 대립적인 것은 아닌 산업구조의 변화가 지적되고 있다.

통신위성은 1962년 통신위성법의 성립이래 COMSAT이 독점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1972년 FCC에 의해 소위 "Open Sky Policy"가 표명된 이후 민간사업체에 자유로운 운영이 개방되어 차례차례 통신위성이 가동되고, 이것이 CATV와 결합하여 다양한 전개를 보여준다.

Atlanta의 지방국 WTBS는, 1976년 Space Station 이라고 명명한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자사의 편성프로그램을 각지역 CATV국에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또 영화프로그램을 CATV국에 배급하는 프로그램공급회사 Home Box Office는 1975년부터 프로그램배급에 통신위성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통신위성을 매개로 하여 프로그램공급사업자와 CATV가 결합한 관계가 일반화되어, 오늘날 1) CATV국에의 프로그램공급자 (자신이 방송사업도 행하는 Space Station 같은 유형과 CA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HBO와 같은 사업자를 포함한다) 2) 중개되는 통신위성의 운영사업자 3) CATV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한 이러한 각각의 시스템을 산하에 두는 시스템운영사업자 Multiple System Operator도 출현)의 3자가 종합연결된 고도의 구조를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1984년 현재 CATV국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는 텔레비전 소유세대의 30%에 달하며, CATV시스템수는 8000개 이상, 프로그램공급회사는 60개를 넘게 되었다. 통신위성도 30개 정도 발사되어, 이러한 위성에 transponder가 10-40정도 구비되어 프로그램공급자와 CATV시스템의 연결역할을 하고 있다.

통신위성의 발전에 비하여 직접방송위성(DBS)의 전개는 매우 늦다. FCC는 1982년에 DBS에 관한 정책과 규칙을 정리한 "보고와 명령"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1) DBS시스템의 소유와 채널지배에

대하여 일체의 제한을 가하지 않고, (면허의 양도와 공동소유인정, Channel의 복수지배, 리스도 허용) 2) 사업의 내용도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 (방송사업인가 Common Carrier 인가, 그 양쪽 다인가);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라는 방침이 그대로 행하여지고 있다.

이 배경에 있는것은 조기사업화 최우선의 입장이다. DBS사업은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제약이 많아서 투자의욕이 저하된다. 이러한 FCC의 자유화정책에 따라서 같은해 8개 회사에 대하여 DBS시스템의 건설허가가 주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은 건설계획을 중지 또는 연기하여, 겨우 USCI사가 1984년, 캐나다에서 KU-band 위성을 리스하여, 인디아나지구를 주요대상으로 저출력의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미 통신위성이 꽤 보급되고 있으므로 직접방송의 사업전망이 서지 않는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것이다.

미국방송계의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1973년에 발표된 통신법개정안에 나타난다. 하원 통신소위원회에 의하여 정리된 개정안의 기본목표인 "다양성, 효율성, 신뢰성"의 입장에서 1)방송면허의 무기한화, 2)"공평원칙"의 대폭완화등의 자유화정책이 나왔다.(성립되지는 않음)

이와같은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생겨난 배경에는 두가지의 주요인이 있다. 그 하나는 미국사회전체에 지배적인 자유화경향이다. 또 하나는, 방송의 영역내의 독자적 사정이 있다. 종래부터 방송이 규제되어 온 큰 이유는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조건에 있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주파수대의 개발에 의한 다국화, 각종 뉴미디어의 다양화등에 의하여 이 기술적제약은 의미를 잃게 되었다. 기술한 CATV에 대한 규제의 소멸, Open Sky Policy에서 보는 위성자유화정책등도 이 규제완화의 일환에 연관된다.

### 3. 영국의 뉴미디어정책

영국의 방송제도는 공공, 민간의 2원체제로 되어있다. 하나는 공공방송인 BBC이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독점권을 갖는 민간방송국이 행하는 방송사업이다. 그러나 이 민간방송도 업무를 감독하고, 방송시설을 소유하는 IBA (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의 프로그램의 제작과 제공을 맡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매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1979년 대처정권의 탄생과 함께 민영화와 경쟁을 향한 전기통신정책의 전환이 생겨났다.

영국에서 가장 일찍 시작된 뉴미디어는 텔리텍스트이다. 텔레비전공중파에 문자정보를 다중하는 뉴서비스는 1974년에 개시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수상기는 1985년에 300만대, 텔레비전시청세대의 14%에 달하고 선택가능한 페이지 수도 전체 500페이지 정도나 되어 세계의 텔리텍스트에서 가장 높은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텔리텍스트가 이와같이 높은 보급율에 도달한 배경에는 여러요인이 있다. 첫째, 정부의 강력한 후원이다. "문자정보월간" 등을 두어 적극적인 홍보를 하며 수상기의 할인제도등을 강구했다. 둘째, 60% 이상의 가정이 대역TV를 이용하고 있는 영국 특유의 사정이다. 이것이 문자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신기종의 가정에의 침투를 원활하게 했다. 셋째, 국내기술의 조기통일로 수신기의 조기양산을 가능하게 한 사정이다. 그리고 넷째, 프로그램내용의 매력도 지적된다.

비디오텍스트도 영국의 뉴미디어개발의 주된 대상이었다. 전화선에서 텔레비전수상기에 정보를 보내는 이 새로운 서비스는 1979년 전기통신공사(BT)에 의해 "Prestel" 이라는 이름으로 런던일부지역에 실용서비스가 개시되었다. 뉴스, 생활, 오락, 주식등 다양한 정보 5만페이지로 시작했는데, 순조로이 신장하여 82년 봄에 가입자 수가 14,400, 83년 가을에는 32,000 정도였고, 그후 신장세가 둔해졌다. 83년시점에서 정보 275,000페이지중 200,000페이지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비즈니스 관계의 가입자가 85%정도 차지하므로 가정을 주요 목표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대처정권의 탄생이후 뉴미디어문제는 CATV, DBS의 두 영역에 중점이 옮겨갔다. 케이블문제는 1981년 7월 대처수상이 내각내에 "정보기술자문 Panel위원회" (ITAP)를 설치하여 착수했다. 이 위원회가 케이블의 규제완화와 DBS의 조기도입을 권고하는 등의 경위를 거쳐 83년 4월에 정부가 "CATV 백서"를 발표하고 규제완화정책의 기본방침을 표명했다.

이 결과, 1984년에는 "케이블및 방송법"이 제정되었다. 이법에서 내놓은 제도는 Cable Authority라 명칭이 붙은 공공사업체를 두어, 이에 의해 영업권을 받은 CATV 사업자가 그 감독하에 사업운영을 한다고 하는 매우 영국적인 것이지만, 여기에 제 3의 사업체가 등장하여 30년 계속된 BBC, IBA의 이원체제에 중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적정비와 함께 정부는, 82년에 전국지점에서 다용량

케이블에 의한 Pilot Project를 행하는 잠정적 독점을 주는 동시에 BBC와 IBA의 재송신에만 업무를 한정된 기존의 CATV에 재송신서비스의 존속을 조건으로 신규서비스의 개척을 인정하는 등 CATV의 촉진책에 적극 착수했다. 그러나 84년 가을, Pilot Project를 실행한 것은 1개사뿐, 기존의 유력한 케이블업자도 소유한 시스템을 파는등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한편, 융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유럽규모의 통신위성을 매개로 각국의 CA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이다. 그 효시인 1982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Sky Channel외에 금일에는 Movie Channel, Music Channel등 다수의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유럽에서 이분야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DBS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1982년 3월에 정부가 86년 운용개시를 목표로 한 국산위성의 발사결정과 함께 이 채널을 BBC에 할당한 것으로 시작한다. 계속하여 정부는 IBA에도 이 채널의 위성방송을 허가하는 방침을 결정, 기술한 1984년의 "케이블및방송법"에, IBA의 위성분야에의 진출을 인정하는 조항을 많이 두었다.

이법에는 그밖에도 처음부터 BBC와 IBA가 개별적인 위성방송계획에서 경쟁할 가망이 적어서 양자가 공동으로 사업운영을 하기 위한 기관을 시한부로 설립하는 규정도 첨가되었다. 그러나 진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오늘날은 당초의 적극자세에서 물러난 감이 있다. 유럽은 DBS방송보다도 통신위성과 케이블을 결합한 보다 실용적인 운영시스템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공통이어서 영국에서의 변화도 이러한 방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4. 서독의 뉴미디어정책

서독은 공공방송국가였다. 방송은 공공기관의 독점적 운영으로 하고, 자유경쟁에 의하여 민간기업인 신문이 방송에 참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혀있다. 뉴미디어문제도 이 테두리 안에서 시작되었다. 서독에서 뉴미디어가 등장한 것은 1980년부터인데, 공중파에 문자정보를 실어서 제공하는 텔리텍스트의 실험방송이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서 방송계와 신문계의 사이에서 개념논쟁이 있었다. 문자다중시스템은 방송이라고 규정된다면 신문은 이서비스에서도 따돌림을 당한다. 그래서 신문측은 이것을 문자정보를 보내는 의미에서 신문이라고 주장한 (이입장에서 신문측은 이것을 화상신문이라

함) 결과, 신문의 참가가 인정되어, 총화면 200페이지중 15%를 전국지 5지가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85년 5월 현재 문자방송의 수상세대는 전국에서 100만, 이것은 텔레비전수상세대의 9.5%에 해당된다. 전화선을 이용하여 문자정보를 보내는 비디오텍스도 같은해인 1980년부터 야외실험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전화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는 우전성의 사업으로 서베를린과 쾰른도르프의 2지구에서 시작하여, 당초는 1985년에 서독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시스템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이서비스를 수신하는 가정은 아직 소수여서 85년 5월 현재 25,000 세대, 보급율은 0.1%에 지나지 않는다.

CATV는 1984년에 겨우 시험이 시작되었다. 서베를린, 뮌헨, 도르트문트, 루드빅스하펜의 4지구에서 시험을 행하는 것을 연방정부가 결정한 것이 1978년이다. 그러나 이실험을 뒷받침하는 당해주법 제정등의 지체와 여러 채널의 경합적 프로그램 제공이 가져온 문화적 저속화를 겁내는 사회민주당 연방정부의 소극적 자세등의 요인에 의해, 오랜기간 답보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래서 현정권에의 교대를 거쳐 1984년초에 Ludwigshafen에서 실험운영이 시작되고 계속하여 같은 해 4월에 뮌헨, 85년에 들어서 6월에 도르트문트, 8월에 서베를린의 전프로젝트가 겨우 갖추어졌다.

이러한 실험은 주해당정부(정부여당과 다름)의 정책에 따라서 허용하는 형태의 비중은 다르지만, 어느것이든 민간프로그램제작 사업자의 참가를 인정하여 이것이 방송분야에 있는 공공독점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결과가 되었다. 현재는 어떤 실험기간 중이지만, 85년 8월 현재의 케이블가입은 49만 세대정도(서독전세대의 약 2%)이다.

위성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공동이용의 통신위성을 사용하여 기존의 공동수신조직도 포함한 CATV 시설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3SAT는 제 2독일 TV가 독일어권 제국의 방송협회와 공동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84년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SAT-1은 유력신문, 출판사등의 공동회사가 제작하는 민간 프로그램으로 85년초부터 CATV에의 배급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통신위성과 CATV를 결합하여 뉴미디어의 적극개발을 기도하는 연방정부의 미디어정책 구체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질서를 검토하여 온 주수상회의의 합의의 표현일 수도 있다.

DBS에 대하여는, 프랑스와의 공동개발로 서독과 프랑스에서 각각 위성을 쏘아올리는 계획을 85년에 실행예정이었으나, 86년 7

월이전의 운용개시는 무리이므로. 발사가 연기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각주의 일치하지 않는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제 1TV(ARD)와 제 2TV(ZDF) 사이의 방침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독의 뉴미디어 발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원인은 많지만 가장 큰 요인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한관계의 조정, 정책적으로 다른 주정부간의 조정과 합의등의 복잡함, 게다가 법제도적인 질서중시의 국민적 특성등에서 보여지는 상황이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5. 프랑스의 뉴미디어정책

프랑스의 뉴미디어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행정구조와 사회당정권에 의한 개방정책의 추구라는 요소가 많다.

프랑스에서 최초로 등장한 뉴미디어는 텔리텍스트이다. 1979년에 시작한 이 서비스는 3채널의 국영 TV 망에 다중하는 외에, 파리등 3지구에서는 전용채널(1채널에 5000page 이상제공가능)을 써서 대량의 정보를 서비스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TV국 자신외에 기상청, 국철, 주식거래소 등 각국의 제 3자기관이 독자적으로 편집한 정보잡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자의 수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1985년 9월 현재 수신기수는 약 3만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도리어 호조를 보이는 것이 비디오텍스트이다. 지스카르데스탱 정권은 1978년에 발표한 노라, 망끄보고서들 기초로하여 "텔레마띠끄" 계획을 연구해냈다.

이것은 전기통신과 정보처리를 결합한 시스템에 의해 고도의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구상인데 중요한 구체화의 하나는 비디오텍스트서비스였다. 이 서비스는 PTT (우편. 전기통신. 방송성)에 의해 "Teletel"이라는 이름으로 1981년에 실험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82년에는 장래 모든 전화부를 이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Minitel"이라 이름 붙여진 소형디스플레이장치가 개발되어 무료로 대출되었다. 이것이 촉매가 되어서 보급은 급격히 확대되어 85년 가을에는 100만대를 돌파 87년에는 3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1년에 등장한 미테랑정권은 전정권이 소극적이었던 케이블망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프랑스에 종래부터 보급되고 있는

소규모의 공동수신시설로서 CATV는 전TV세대의 40%가까이를 차지하지만 미테탕정권은 1982년 4월, 대규모케이블시스템의 도입구상을 표명, 이어서 같은해 11월 "플랑. 까블" 구상을 발표했다. 이계획은 광섬유를 이용한 다목적 광대역통신망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계획인데 케이블망자체의 건설, 소유의 권한은 국가(PTT)에 귀속되지만 서비스제공사업체에는 민간의 참가를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이 시스템운영에는 83년 가을까지 70여개의 시에서 신청이 있었으나 85년에 파리등 3개 도시가 국가와 케이블건설 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현실화하는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통신위성이용에 대해서는 1983년에 발사한 유럽공동의 지역위성을 사용하는 계획을 중심으로 프랑수어권의 5개방송협회가 공동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유럽의 기존의 케이블공동조직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84년부터 시작하였다. DBS에 대하여는 서독과의 공동개발로 프랑스, 서독 각각의 위성을 발사하는 계획이 진행되어 왔으나 여러사정에 의해 86년 이후의 문제로 되었다.

## 6. 맺음말

이상에서 구미주요국의 뉴미디어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특징을 강조하면서 개별적으로 고찰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국의 정책의 공통성과 독자성의 양면에 주목하면서 총괄해보면, 한국가의 뉴미디어정책에 현실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정치의 영향이다. 대부분 어떤 국가에 있어서도 정권의 교대가 미디어정책의 전환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둘째, 국제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 구미제국이 여러가지 독자성을 나타내면서도, 기본적으로 고도정보화를 향한 정책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보화가 진행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추세를 보면서 국제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식이, 적극적인 기술개발정책, 산업진흥정책을 낳아 이것이 미디어정책의 적극적인 전개를 재촉하는 큰 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통신위성에 중계되는 프로그램등 뉴미디어서비스가 국경을 넘는 규모를 보임에 따라서, 국제적인 정보환경의 가운데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정도 전진적인 미디어정책을 촉구하는 큰 요인이다. 이러한 현대의 국제환경

은 각국의 미디어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통솔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째, 각국의 사회구조가 미디어정책의 독자성을 생기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 관점에서 미디어정책의 차이점을 판별하면 미국과 유럽제국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민간부분의 비중이 높고 사업적 창의에 의한 벤처를 많이 허용하는 미국에서는 기술주도, 산업주도의 자유로운 미디어전개가 현실을 변하게 하는 한편, 정부의 미디어정책도 허용적인 색채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공부분의 입장이 강한 유럽에서는 미디어정책은 법제도적 변혁의 측면이 강하다. 서독에서는 특히 법제도의 규정성이 강하고 연방제를 기본으로 한 각주간, 연방, 주간의 조정과 법적정비의 문제가 많은 시간과 작업을 요구하여 신속한 정책전개를 지체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영국에서는 공공성의 존중이 방송분야에서도 매우 중시되어, 민간사업의 도입에도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성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네째, 문화관의 문제가 있다. 방송이 어떠한 문화적 책임을 질 것인가의 방향이 미디어정책자세에 반영된다. 많은 정보채널의 병존과 그 경합은 필연적으로 대중성, 오락성이 강한 프로그램의 범람을 초래하는데 문화의 저속화가 기피되는 문화관에서는 미디어정책이 억제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각국의 통신정책내지 미디어정책은 여러요인으로 영향을 받아 그 독자성과 공통성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각 국가, 각사회의 제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나, 선진국의 미디어정책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방향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술개발, 산업전개, 사람들의 문화적성숙, 그리고 국제교류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